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0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병도, 김혜련,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일과 생활(가족돌봄, 여가, 휴식, 자기계발 등)의 균형은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이며 누구나 누려야 할 가치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일·생활 균형은 노동, 기업, 가정, 성평등, 돌봄 등 여러 분야에 관계되어 있고, 세부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부서도 달라 일·생활 균형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총괄적 추진 체계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기구나 위원회가 없는 상황임.
- 이에 일·생활 균형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정책 컨트롤타워와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일·생활 균형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마.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일·생활 균형 지원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사.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일과 가족생활, 모·부성 및 돌봄보장, 여가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개인생활 등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한 서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 제도 도입·확대 등 노동자

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생활 균형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생활 균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일·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일·생활 균형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일·생활 균형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생활 균형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일·생활 균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생활 균형 및 지원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일·생활 균형이나 노동 관련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일·생활 균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지원
2.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업 컨설팅
3.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5.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서울시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

원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취득에 관한 컨설팅, 교육 지원 사업

5.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위원회의 존속기한은 3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센터 설치 및 기능)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제13조(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비용 발생
 - 제14조(지원사업)에 따른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여성가족재단 내 1개 팀이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 추진사업으로 같음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붙임 참조)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비용 발생하나, 제2항에 따라 성평등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붙임 참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 일·생활 균형 지원 실태조사 실시 비용

나. 전제

- 추계 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함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용은 동일 실국에서 운영중인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20년 예산액을 준용하여 산출(554,923천원/임차료 포함)
- 본 조례안에 따른 실태조사 주기는 2년으로 가정하고 2019년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비용(30,000천원) 준용하여 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합계) ≙ 2,864,615천원(연평균 572,923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소계(a)	-	-	-	-	-	-
세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 (안 제11조)	554,923	554,923	554,923	554,923	554,923	2,774,615
	일·생활 균형 지원 실태조사 실시 비용 (안 제13조)	30,000	-	30,000	-	30,000	90,000
	소계(b)	584,923	554,923	584,923	554,923	584,923	2,864,615
□ 총 비용(b-a)		584,923	554,923	584,923	554,923	584,923	2,864,615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 일·생활 균형 지원 실태조사 실시 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 2,774,615천원
 -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 = 554,923,000원 × 5년
 - = 2,774,615천원
- 일·생활 균형 지원 실태조사 실시 비용 ≍ 90,000천원
 - 일·생활 균형 지원 실태조사 실시 비용(2년마다 1회)
 - = 조사비용×조사횟수
 - = 30,000천원×3회
 - = 90,000천원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안 제6조 관련)

□ 사업목적

- 성평등위원회 등 여성정책 거버넌스 운영으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내실화
-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하여, 홍보물 등으로 제작함으로써 서울여성의 정책 체감도 및 참여도 향상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6조 및 제12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2019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 계획(여성정책담당관-1408호, 2019.1.24)
 - 2019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 운영계획(여성정책담당관-3212호, 2019.2.27)

□ 추진경위

-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추진계획 수립('12.3.21. 시장방침 제81호)
- 여성정책 비전 10대 핵심과제 실천보고회 개최('12.4.16.)
- 성평등위원회 운영('12년~)
- 복지거버넌스(여성가족분야) 운영('14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연중)
- 사업내용
 - 성평등위원회(전체회의 및 3개 분과위원회) 운영
 - 복지거버넌스(여성가족 분야 시민소통형 여성가족정책 실행체계 구축사업)
 - 서울시 성평등 정책 확산 및 홍보 추진

□ '20년도 소요예산 : 192,300천원(전액 시비) ※성평등위원회 운영 37,800천원

참고) 제5기 성평등위원회 구성현황 : 39명(당연직 9명, 위촉직 30명)

- 위 원 장 : 시장, 위촉직 위원 중 1명/ 부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분야별	합계	시의원	여성가족	복지행정	시민사회	노동	언론문화	법률
	30명	2명 (6.7%)	7명 (23.3%)	4명 (13.3%)	10명 (33.3%)	2명 (6.7%)	3명 (10.0%)	2명 (6.7%)

※ 당연직(9명) : 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행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안 제14조 관련)

□ 사업목적

- 여성, 가족, 보육, 돌봄 등 영역별 맞춤형 실효성 있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 및 실행
-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및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 서울 여성, 가족이 주인이 되는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02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재단법인 서울여성) 설립 및 서울여성플라자 개관
- '10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
- '15년 성평등도서관 '여기' 개관 및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설립
- '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 우수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 규모 : 지하 3층, 지상 5층(면적 : 대지 6,488㎡, 건물 연면적 22,519㎡)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여성가족시민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실천기능 강화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 서울시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여성가족 돌봄 지원 사업
 - 여성가족 소통공간(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 살림) 활성화

□ '20년도 소요예산 : 13,398,527천원(전액 시비)

참고)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개요(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규 모** : 여성가족재단 내 1개 팀(팀장+직원3)

◇ **내 용**

○ **서울시 성평등 일·생활균형 컨설팅**

-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의 신규 기업 및 기관 맞춤형 방문 컨설팅
- 기존 컨설팅 기업 및 기관 대상 사후지원 컨설팅
- 서면을 통한 기업 및 기관 대상 일·생활균형 진단 컨설팅

구분	방문컨설팅	서면컨설팅
방법	· 기존 대상 : '17~'19년 참여 34개 대상 · 신규 대상 : 25개 기업 및 기관 예정	서울시 기업 및 기관 대상 수준별 진단
횟수	200회(기업 및 기관별 3~4회)	240회(초기 서면진단 기업·기관별 실시)

○ **서울시 성평등 일·생활균형 교육 및 인식개선**

- 교육수요기업과 기관의 유형 및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제공
- 성평등 일·생활균형 교육을 위한 콘텐츠 확충
-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웹플랫폼 기능 개선
- 성평등 일·생활균형 시민인식개선 홍보 추진
- 서울시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운영 및 간담회를 통한 신규 의제 발굴
- 일·생활균형 포럼 개최

◇ **소요예산** : 425,000천원 (출연금 예산 125,000천원+시 보조금 300,000천원)

※ 재단 내 조직이므로 인건비는 제외된 사업비 예산임